

예 산 총 칙

제1조 2009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계	620,484,762	20,708,019
일 반 회 계	481,229,242	14,436,877
특 별 회 계	139,255,520	6,271,142
기 타 특 별 회 계	17,791,490	533,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2,922 13,315,128 3,524,601 288,8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8 399,454 105,738 8,66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21,464,030	5,737,3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217,335 41,620,097 49,626,5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00 1,248,600 1,488,797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9년도 지방채발행은 27,220,000천원임.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변경 없음.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변경 없음.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26,443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